

##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8. 21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8. 31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8. 31 (제8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김 종 철
- 나. 개정사유
  -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제의 명칭이 변경되어 자  
구 수정코자 함.
- 다. 주요내용
  - 조례중 “내무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개정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 정 열)

-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('98. 9.19)됨에 따라 직제  
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함.
- 당연히 개정 조치해야할 사항으로써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나 개정 질  
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“ 생 략 ”

### 5. 토론요지

“ 생 략 ”

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, 제8조, 제11조, 제12조중 “내무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